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8800 손해배상(기)
원 고 우00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피 고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관
대표자 이사 지명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이종석

2.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 에이동 9층
대표이사 김상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오윤경, 구본권

변 론 종 결 2010. 2. 11.
판 결 선 고 2010. 2.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게시물과 같이 사용한 것이 그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18.부터 201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게시물이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네이버(naver)의 회원으로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 제작 및 게시

원고는 2009. 2. 2. 다섯 살 된 원고의 딸이 의자에 앉아 별지 제1목록 기재 음악저작물(‘미쳤어’,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이 용자제작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 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중단 조치

한편, 피고 협회는 2009. 6. 1.부터 2009. 6. 26.까지 피고 회사측에 총 16,462건의 게시물들이 피고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복제,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동영상 역시 피고 협회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측에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 회사는 2009. 6. 17. 이 사건 게시물 전체를 임시 게시중단 처리하였고 2009. 6.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게시요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원고는 2009. 6. 23. 피고 회사측에 위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재게시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게시물의 재게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게시 요청기간(30일)이 도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게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후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이 사건 게시물에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물 자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의해 여전히 게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피고 협회와 피고 회사의 합의 진행 상황

한편, 피고 협회는 2009. 8. 13.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매출의 일부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회원들이 UCC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함에 있어 피고 협회가 보유한 저작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소의 판단대상 및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대상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게시물에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인용하여 공중에 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에 피고 협회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를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게시물이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변경하여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위 청구취지 변경이 교환적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만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취하하는 경우라면 이에 동의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기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인 확인청구이었고, 위 변경된 청구취지는 공중에 공개할 권리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는 소극적인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위 변경은 종전의 청구취지를 축소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교환적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 협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협회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 이미 원고의 블로그에 다시 게시되어 있으며, 피고 협회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 협회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를 금지할 의사가 없어 원고에게는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고, 만일 원고가 추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재의 권리,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비추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다른 게시물에 담아 원고의 블로그에 재게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 재게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까닭에 이 사건 게시물 자체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채 게시 중단되어 있는 점, 을가 제2호증(동의 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2010. 2. 10.경 피고 회사측에 ‘재게시 문제는 귀사가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라고만 통지한 바 있는 점, 피고 협회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어느 포털사이트에 게시를 해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이 게재된 블로그가 영리 목적임을 다투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 협회의 이 사건 게시물 게시 허용 의사는 피고 회사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번복이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서 현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게시물과 관련된 그 법적 지위가 피고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 및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점, 또한 갑 제3호증의2(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재게시요청 절차에서는 ‘공적기관(저작권위원회, 법원 등)으

로부터 권리침해에 해당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삭제요청 및 게시중단 조치에 의해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협회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해당여부

이 사건 저작물이 그 특성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의 가사와 음의 주요 부분을 흉내내어 부르는 것을 촬영하여 녹화한 행위와 이를 UCC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피고 회사의 서버에 등재하는 행위는 각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복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수신 범위의 차단 없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는 이 사건 게시물을 불특정다수인, 즉 공중에게 '전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7, 10호 참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이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위 각 행위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을 흉내낸 것이라고 해도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불완전하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동영상 사이에 음정, 리듬, 화음, 박자를 각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어 복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저작권 침해여부의 전제로서 어떠한 UCC 동영상이 특정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작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 특정 저작물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물을 모방함에 있어 기술적인 완전성 내지는 유사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을 모방주체의 가창실력 등의 우연적인 사정 또는 판단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게 되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을 흉내낸 것임은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시물 자체에서도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동영상도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가사(후렴구), 주요 음 및 실연자(손담비)의 주요 동작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여부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 사건과 같이 어떠한 기본권 주체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하여 공개하는 경우, 일방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 및 문화·예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상대방 기본권 주체의 저작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충돌하는 상

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는 일반규정을 두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권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제한(헌법 제23조 제1, 2항 참조)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저작재산권 보호 및 제한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이 저작권법으로서, 저작권법은 제1조의 규정을 통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여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지적활동의 결과물을 널리 공중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달성함에 그 존재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우리의 저작권법은 여러 조문에 걸쳐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두어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화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 및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제3자가 저작자의 허락이나 기타 어떠한 절차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우리 저작권법상의 제한규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개

념들이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이념,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세밀한 이익형량과 상위규범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물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그 복제 및 전송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소극적인 복제 뿐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까지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인용은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일반에 대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등 참조).

(3) 검 토

우선 이 사건 저작물은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 임이 인정되며(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참조), 원고가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을 원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그 실연자(손담비)와 일부 가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인용’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의 인용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 열거된 목적은 예시적인 것이고 열거적인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어린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분을 불완전하게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것인 점, 이 사건 게시물에는 이 사건 동영상에 덧붙여 ‘그런데 도대체 이 노래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일까요? 집에서는 거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질 않는데 말입니다. 뭐 그냥 그냥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아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소녀 취향의 노래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라는 내용의 글과 기타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딸을 촬영한 별개의 사진들이 함께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족여행 중에 있었던 어린아이인 원고의 딸의 귀엽고 깜찍한 행동에 대한 기록과 감상, 대중문화가 어린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비평 등을 담아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개한 것으로서 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상업가치를 도용

하여 영리목적은 달성하고자 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물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주종관계는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용상의 주종관계, 즉 질적인 면에서의 주종관계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의 개별적 특성, 인용의 목적, 인용저작물이 피인용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어 피인용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이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동영상의 분량(53초) 대부분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분을 따라 부르면서 실연자인 가수 손담비의 춤동작을 흉내내는 것에 할애된 점은 피고 협회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게시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그 일부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총 53초의 분량으로서 처음 15초간은 원고의 다섯 살 된 딸이 부정확한 음정 및 가사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워서 .. 못 했어.. 나를 떠-떠떠 -나'라며 이 사건 저작물의 후렴구의 일부를 따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딸의 춤동작이 보여질 뿐 노래 자체는 촬영 장소의 안내 방송 및 주위 소음 등으로 가사를 판별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녹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부분

은 이 사건 동영상의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어린 딸이 주는 춤과 귀여운 표정 및 행동 등이 기록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가지는 저작물로 판단되는 점,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가창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분량은 이 사건 동영상 중에서 15초 정도로 극히 짧으며,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이 사건 저작물과 상당 부분 상이하고 가사조차도 원 가사의 일부 단어가 순서를 달리하여 부정확하게 차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녹음 및 게시 방식에 있어서도 비전문가에 의하여 복제되어 화질, 음질 등의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고 특별히 상업적으로 포장되어 게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일반 공중의 관념으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이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대체한다고 느껴진다거나, 이 사건 게시물이 실제로 피인용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저작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모든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문화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어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은 널리 향유됨으로써 존재 의의를 가지는 특성이 있어 그 향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이익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여기에 표현의 자유 및 문화·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향해 노력한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정당한 권

리를 보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한 UCC 형태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잠재적인 불이익과 표현 및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 창조력과 문화의 다양성의 저해, 인터넷 등의 다양한 표현수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문화 산물의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 협회가 보유하는 저작재산권이 저작권법으로 정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 협회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라 하겠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피고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고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의 범주에 포함되어 피고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저작권만을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측에 그 삭제를 요청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중단 처리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의하여 그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협회는 UCC 사이트인 '네이버 비디오'에 게시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블로그에 게시된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애초에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비디오 사이트로 링크가 설정되어 비디오 사이트에서도 게시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게시물은 이 사건 게시물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위치가 이 사건 각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협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것 자체는 사실인 점, 이에 피고 협회로서도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다른 게시물을 통하여 다시 게시함으로써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및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손해액은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9. 1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소명 및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의무를 지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협회가 피고 회사측에 저작권자로서 일응 권리 침해를 소명하면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해왔던 점, 피고 회사는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재게시절차를 안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_____

 판사 이금진 _____

판사 이혜민 _____

별지 1

음악저작물의 표시

작품명: 미쳤어
작품코드: 1001142974
작곡: 용감한형제(W07259)
작사: 에릭(W03292)
가수명: 손담비

별지 2

게시물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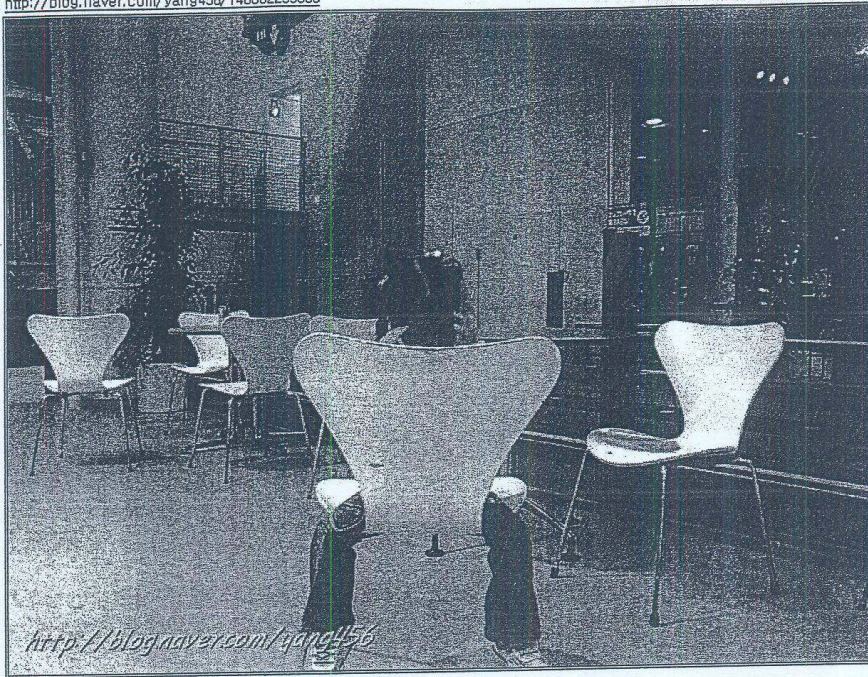
1. 인터넷 주소:

[http:// blog.naver.com/yang456/140062293006](http://blog.naver.com/yang456/140062293006)

2. 표시

가. 다섯 살 된 여자아이가 자동차 전시장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땐 미쳐 널 잡지 못했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53초의 동영상
과

나. 위 여자아이의 사진을 포함한 첨부문서와 같은 게시 글



http://blog.naver.com/yang456

일본 관광 중 20일 들렀던 오다이바의 자동차 전시장인 '메가랩'에서,
 자동차 구경하다가 잠깐 심심해진 지원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노래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일까요?
 집에서는 거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질 않는데 말이지요.

뭐 그냥 저냥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아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소녀 취향의 노래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저와 제 아내의 손담비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 번도 못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조혜련씨가 부르던 모습만 기억나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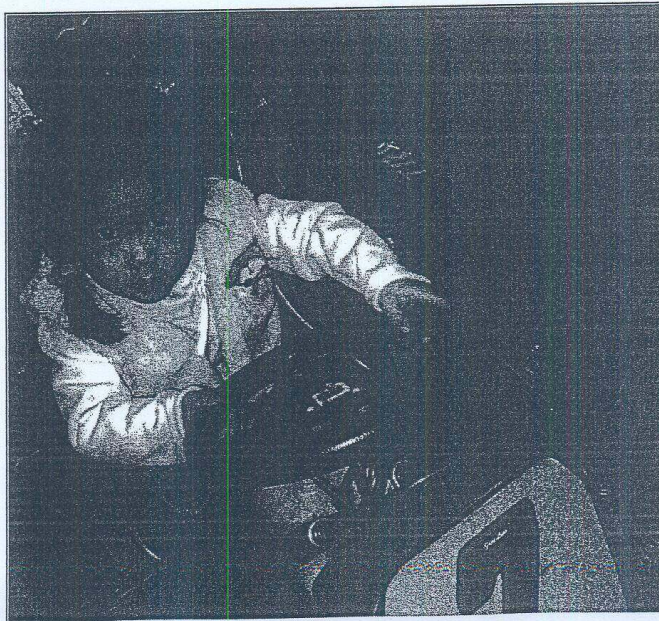
```
<IFRAME name=mplayer src="http://blog.naver.com/post/multimediaFLVPlayer.jsp?vid=AE506F4993173F0F25F1EE94889AA5D63042&in
key=V1239e5a49d5b053e844487f069f56feaf0b3681d954fb01ac900e113b03b0a16f787f069f56feaf0&width=500&height=408&ispublic=true"
frameBorder=no width=500 scrolling=no height=408">/IFRAME>
```

intro) yes yes, no no, which way to go,
 2008 e to the r ic, let's go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시 돌아오지 않단걸 알면서도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만 미쳐 널 잡지 못했어
 나를 떠나버렸어 떠나 버버버버버 버려
 그 짧은 추억만을 남겨둔 채로 날



^^ 그리고 카트를 타고 부릉 부릉! ^^





blog korea

이 블로그에 UP드려 주세요!

